

기독교한국침례회 센텀영안교회 규약

1차 개정안	2018년 12월 19일 사무처리회 통과
2차 개정안	2023년 12월 13일 사무처리회 통과
3차 개정안	2024년 12월 1일 사무처리회 통과
4차 개정안	2026년 2월 22일 임시사무처리회 통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76번길 34(재송동)
기독교한국침례회 센텀영안교회
전화번호 891-7034

기독교한국침례회 센텀영안교회 규약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교회 명칭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센텀영안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그리스도의 몸인 본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성도간의 친교와 복음선교 및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교인) 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어 침례를 받고 본 교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교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도, 선교 및 교회개척, 지원사업
2. 한국의 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사업
3. 한국교회, 세계교회, 선교단체 및 기관의 연합사업
4. 남북교류 활동과 남북교회의 협력 사업
5. 정부, 사회 및 국제적 공동관심사의 조사 연구 활동 등 연합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의 위탁 사업
7. 사이버 및 이단 집당에 대한 대책 사업
8. 구제 및 사회복지 사업
9. 교육

제 2 장 목회자 및 직원

제 5 조 (구성)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은 목회자와 직원을 둔다.

1. 담임목사
2. 부목사(직능에 따라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 행정목사, 교육목사, 음악목사 등)
3. 전도사(직능에 따라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4. 직원(기능에 따라 사역원에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 관리자, 사무원 등의 명칭으로 사용한다)

제 6 조 (임명)

1. 담임목사
 - ① 담임목사는 사무심의회와 사무처리회의 출석 정교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청빙하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무처리회에서 신임 투표를 통해 출석 정교인 2/3 이상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 ② 담임목사는 신임일로부터 6년이 되는 시점에 1회에 한하여 사무처리회에서 재신임 투표를 통해 출석 정교인 과반수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 ③ 신임 또는 재신임이 부결될 경우, 담임목사는 즉시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④ 본 규정에 따른 사임은 해임이 아닌 임기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본다.

⑤ 신임 및 재신임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2. 부교역자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사무심의회 동의를 얻어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3. 직원

교회의 필요에 따라 여러 사역원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역원장은 담임목사가 임명하고, 사역원별 직원은 사역원장의 추천으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 7 조 (임 무)

1. 담임목사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본 교회를 대표하며 영적 지도자가 된다. 목사는 모든 예배, 행사, 각종 경조 집회, 각종 사경 훈련행사등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일반적으로 목사에게 위임된 모든 사역을 수행한다. 목사는 사무처리회, 사무심의회 의장이 되며, 기타 교회 기관(부설기관 포함)의 유직위원(有職委員)이 된다.

2. 부목사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모든 임무를 보좌하며, 또한 그에게 맡겨진 고유의 책임과 사역을 수행하고, 담임목사 유고 시는 사무심의회에서 지명한 부목사가 담임목사 임무를 대행한다.

3. 전도사

전도사는 담임목사와 부목사를 보좌하며, 담임목사의 지휘 감독 하에 부과된 임무를 담당한다.

4. 직원

기능에 따라 각 사역원별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제 8 조 (안식년)

담임목사는 6년을 봉직한 후 재신임이 되면, 1년 이내에서 안식 기간을 갖는다.(목회자의 요청과 사무심의회 판단에 따라 안식년을 나누어 쓸 수 있다) 다른 사역자들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안식 기간을 갖는다.

제 9 조 (사역자와 직원의 정년)

1. 본 교회 목사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2. 담임목사는 정년 또는 사임시 원로목사로 추대하지 아니하며, 모든 직분과 권한을 종료한다.
(단, 현존하는 원로목사직은 유지한다)

3. 본 교회의 전도사와 일반 직원의 정년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제 3 장 장로(호칭)와 안수 및 서리집사

제 10 조 (안수집사)

몸된 교회를 섬기며 목사의 복음 전도와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돕는데 그 임무가 있다.

제 11 조 (자격)

1. 구원받은 사람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고 본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2. 최소 서리집사 경력 5년 이상으로 하되 본 교회의 봉사 3년 이상으로 하며 최소 연령은 만 40세로 한다.
3. 타 교회 안수집사로서 전입할 경우 본 교회의 봉사 2년 이상으로 한다..

제 12 조 (선출방법 및 안수)

1. 사무심의회에서 추천하여 사무처리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득표자로 한다.
2. 시취위원회의 시취를 합격한 뒤 교회가 정한 날에 안수한다.

제 13 조 (구분) / 장로(호칭)와 안수집사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장로(호칭) : 사무심의회의 임기를 마친 안수집사는 장로로 호칭한다.
2. 안수집사 : 사무심의회 회원으로 섬기는 자

제 14 조 (서리집사)

몸된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의 사역을 돕는데 그 임무가 있다.

제 15 조 (자격)

1. 구원받은 사람으로 침례(세례) 받은 자로서 성도의 생활에 흠이 없는 자로 한다.
2. 본 교회에 충실히 봉사하는 자로 선출하며 타 교회에서 전입시 그 직분을 사무심의회 결의를 거쳐 사무처리회에서 인준한다.
3. 만 30세 이상으로 한다.

제 4 장 교 인

제 16 조 (교회 회원)

1. 본 교회의 회원은 교인등록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자격을 얻는다.
2. 본 교회는 등록교인의 사망, 이주, 장기간의 결석, 특별한 사유 또는 비기독교인적인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본 교회 교적에서 종적, 전적, 취소 및 퇴적할 수 있다. 사망과 이주, 장기간의 결석 및 전적은 자동 처리되며 사망과 이주, 장기간의 결석 및 전적 외에 이같은 처분은 본 교회 사무심의회 결의로 할 수 있다. 단, 장기간의 결석이나 비기독교적인 행동의 정의와 해석은 교회의 사무심의회 의결에 의한다.

제 17 조 (교인의 구분) / 본 교회 교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교인 : 교적부에 등록된 자로서 침례(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새가족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2. 준교인 : 교적부에 등록된 자로서, 아직 본 교회의 새가족 성경공부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 한다.

제 18 조 (권리와 의무)

1. 본 교회의 교인은 규약에 규정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종 집회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의제에 동일한 선거권, 결의권 및 발언권을 갖는다.
2. 본 교회의 교인은 본 교회의 예배와 행사에 성실히 참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3. 본 교회 교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교인에 한하여 부여한다.

제 5 장 사무처리회

제 19 조 (사무처리회)

1. 사무처리회는 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 사무처리회는 정기 사무처리회와 임시 사무처리회로 소집하되 정기사무처리회는 연1회, 임시 사무처리회는 담임목사 또는 사무심의회결정에 따라 필요 할 때마다 열 수 있다.
3. 사무처리회의 의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4. 사무처리회의 안건은
 - 가. 연 사업 및 예산 인준
 - 나. 담임목사 청빙, 신임, 재신임 및 사면 인준의 건
 - 다. 규약 개정의 인준
 - 라. 안수집사 인준
 - 마. 기타 사무심의회에서 의결을 구하는 사항 인준
5. 사무처리회의 회원은 본 교회 정교인의 제반 의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단,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6. 개회 정족수는 출석인원으로 하며 사무처리회의 결의는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규약 개정 및 신임, 사면 인준은 참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대내외 의결 표시 방법
교회의 대내외적 사무처리회의 의결을 표시하기 위한 서류는, 사무처리회 서기가 사무심의회결의 의결 내용에 따라 작성한 '사무처리회 의결서'에 담임목사와 사무처리회의 서기가 서명함으로써 대내외적 법적 서류로서 갈음한다.

제 6 장 사무심의회

제 20 조 (사무심의회 구성)

1. 사무심의회 구성은 담임목사, 시무안수집사로 구성하고 담임목사를 의장으로 한다.
2. 사무심의회는 사무처리회로부터 위임받은 의결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산하에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1 조 (선임 및 임기)

1. 사무심의회 회원 선임은 65세 미만의 안수집사 가운데 기존 사무심의회결의를 얻은 자로 한다.

2. 사무심의회 회원의 기간은 재적 교인 수에 따라 달라진다.
2,000명 미만인 경우 12년 시무할 수 있으며,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일 경우 9년, 3,000명 이상 일 경우 6년으로 한다.
3. 임기 유효기간 중이라도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나, 본인이 원할 시에 휴무 혹은 은퇴할 수 있다.

제 22 조 (사무심의회 임무)

1. 사무심의회는 사무처리회의 운영세칙에서 규정한 위임내용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하고, 사무처리회에 심의 의결내용을 보고한다.
2. 사무심의회는 효율적인 심의의결을 위해 그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무심의회에 보고한다.
3. 사무심의회는 사무심의회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목회협의회에 위임할 업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사무심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4. 사무심의회는 본 교회의 목적, 사업수행에 관계되는 재산권 행사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사무처리회에 보고한다.
5. 사무심의회는 당교회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대표자 선임 등기 및 계약 등을 체결할 시 대표자를 선임하는 업무를 한다. 단, 대표자의 선임은 담임목사, 부목사, 시무안수집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 23 조 (사무심의회 소집 및 정족수)

1. 회의의 소집
사무심의회 회의는 담임목사의 소집 요청이나 3인 이상의 사무심의회 위원의 소집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최소 2일 전에 통고하여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개회 정족수
사무심의회 회의의 개회 정족수는 2/3로 한다.
3. 의결 정족수
사무심의회 회의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대내외 의결 표시 방법
교회의 대내외적 사무심의회 의결을 표시하기 위한 서류는, 사무심의회 의결서기가 사무심의회 의결내용에 따라 작성한 '사무심의회 의결서'에 담임목사와 사무심의회 의결서기가 서명함으로써 대내외적 법적 서류로서 갈음한다.

제 7 장 확대팀장회

제 24 조 (확대팀장회 구성)

확대팀장회의는 담임목사, 사역조정실장, 사역원장, 각위원장, 교구총무, 목사, 부서의 부장 및 각팀의 장으로 구성하며 담임목사는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25 조 (확대팀장회 임무)

1. 확대팀장회는 사무심의회로부터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2. 사무심의회 의결 상정 및 의결 재심의 요청권을 가질 수 있다.

제 26 조 (확대팀장회 소집과 정족수)

1. 소집
확대팀장회는 담임목사 또는 사무심의회 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최소 2일 전에 통고하여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개회 정족수
확대팀장회 회의의 개회 정족수는 출석인원으로 한다.
3. 의결 종족수
확대팀장회 회의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8 장 감 사

제 27 조 (감사의 선임과 임기)

1. 감사의 선임은 사무심의회에서 추천된 2인으로 사무처리회에서 인준한다.
2.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28 조 (감사의 선임과 임기)

1. 감사는 본 교회의 모든 기관의 회계업무와 위임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감사한다.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 29 조 (재산)

본 교회의 재산은 교회의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모든 부동산 또는 동산을 말한다.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두 종류로 나눈다.

1. 기본재산은 부동산의 결의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제 1 항의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 부동산은 기독교한국유지재단 혹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센텀영안교회 명의로 등기한다.

제 30 조 (재산의 관리)

본 교회의 재산의 관리 및 재산권에 관하여는 사무심의회에서 결정 처리하고 사무처리회에 보고 한다.

제 31 조 (재원)

본 교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회의 각종 헌금
2. 각종 기부금, 찬조금
3.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5. 기 타

제 32 조 (회계 연도) 본 교회의 회계 연도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33 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교회는 회계연도 결산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사무심의회 의결을 거쳐 사무처리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본 교회는 연간 예산 편성 시, 선교 및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20%이상을 편성한다.
3. 본 교회는 연간 예산 편성 시, 다음세대(주일학교, 청소년, 청년 사역)에 전체 예산의 10%이상을 편성한다.
4. 본 조의 비율은 의무 조항이며, 특별한 사유로 미달될 경우 사무처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재정 공개)

1. 본 교회는 분기 1회 이상 재정 내역을 공개한다.
2. 공개 항목은 수입 총액, 지출 총액, 항목별 지출 내역을 포함한다.
3. 본 교회는 정기 사무처리회 시 재정 보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4. 재정 공개는 교인의 알 권리 보장과 교회 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부설기관)

1. 본 교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지역사회 봉사 및 육영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 2 조 (내규제정)

이 규약이 정한 것 외에 교회운영과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심의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조 (규약의 변경)

이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무심의회에서 결의 상정하여 정기 사무처리회나 임시 사무처리회에서 참석인원의 2/3의 의결로서 수정할 수 있다.

제 4 조 (시행일)

이 규약은 사무처리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9)

1. 본 규약은 사무처리회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7장제26조제1항은 본 규약 시행일 이후 담임목사 및 사무심의회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 (2023. 12. 13)

1. 본 규약은 사무처리회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2장제6조제1항은 본 규약 시행일 이후 청빙하는 담임목사에 대해 적용한다.
3. 제4장제17조제1항은 본 규약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4. 제5장제19조제6항은 본 규약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부 칙 (2024. 12. 1)

1. 본 규약은 사무처리회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1장제1조는 본 규약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3. 제9장제29조제3항은 본 규약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4. 제5장제19조제6항은 본 규약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부 칙 (2026. 2. 22)

- 본 규약은 임시사무처리회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장제6조제1항, 제8조는 본 규약 시행일 이후 청빙하는 담임목사에 대해 적용한다.
- 제2장제9조는 본 규약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 제3장제15조는 본 규약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 제5장제19조제4항 및 제6항은 본 규약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 제6장제22조제5항은 본 규약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 제9장제33조, 제34조는 본 규약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